#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49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이언주・민병덕・소병훈

이광희・박 정・정진욱

황명선 • 이상식 • 정성호

김현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장의2 보험자병원

- 제40조의2(보험자병원의 설립) 공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 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험자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제40조의3(보험자병원의 책무)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 2.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서비스
  -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의료서비스
- 제40조의4(보험자병원의 사업) 보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의료사업

- 가.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 사업
- 나.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 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
- 다. 자원봉사 운영사업
- 라.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 등 보건의료인력의 훈련
- 3. 의학계 관련 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그 밖에 장례식장 운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제40조의5(경영평가) ① 공단은 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자병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1.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 3.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

-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6.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 7. 그 밖에 보험자병원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자병원에 대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6(비용 지원) 보험자병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에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 위에서 보험자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장의2 보험자병원
<u>&lt;신 설&gt;</u>	제40조의2(보험자병원의 설립) 공
	단은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의 운영사업을 실시하
	기 위하여 보험자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u>&lt;신 설&gt;</u>	제40조의3(보험자병원의 책무) 보
	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u>대한 의료서비스</u>
	2.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
	한 의료서비스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
	련된 의료서비스
<u>&lt;신 설&gt;</u>	제40조의4(보험자병원의 사업) 보
	험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의료
	<u>사업</u>

<u>가. 방문진료, 의료지원 등</u> 지역사회 연계 사업

나. 재활시설방문, 의료봉사,긴급구호활동 등 지역사회공헌사업

다. 자원봉사 운영사업라. 임상상담 등 사회복지 상담사업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 등 보건의료인력의 훈련
- 3. 의학계 관련 연구
- 4. 임상연구
- 5. 진료사업
- 6. 그 밖에 장례식장 운영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보 험자병원의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

<u>제40조의5(경영평가)</u> ① 공단은 <u>매년 보험자병원의 경영실적을</u> 평가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자병원에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의

<신 설>

의결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 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1.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
-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 성
- 3. 조직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4.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 노력
- 5.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6. 합리적 성과급 지급제도 운 영
- 7. 그 밖에 보험자병원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보험자병원에 대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그 밖에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비용 지원) 보험자병원

<신 설>

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에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자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